

대전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3가합100761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소]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 2015. 5. 13 선고 2014나12810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3가합100761 판결

전문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4. D

5. E

6. F

변론종결 2014. 7. 22.

판결 선고 2014. 8. 21.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78,958,456원 및 그 중 478,424,396원에 대하여 2013. 2. 14.부터 2013. 5. 30.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와 피고 D 사이에 2012. 2. 2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D는 피고 C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와 2012. 2. 27. 접수 제1736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1) 피고 B와 피고 E 사이에 2012. 3. 1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 E는 피고 B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와 2012. 3. 13. 접수 제227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1) 피고 B와 피고 F 사이에 2012. 5. 2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 F은 피고 B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와 2012. 5. 29. 접수 제5211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1. 11. 3.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신한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순번에 따라 구별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신한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각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2011. 11. 3.	3억 원	2012. 11. 2.	2011. 11. 3.	신한은행	<기운>일반자금대출	3억 원
2	2011. 11. 3.	1억 8,000만원	2012. 11. 2.	2011. 11. 3.	신한은행	<기운>일반자금대출	2억 원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는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그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등을 상환하여야 하고,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아래 대위변제일인 2013. 2. 14.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나. 피고 B, C의 연대보증

피고 B(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C(피고 B의 형)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회사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피고 회사는 2012. 11. 2. 위 대출원리금 상환 연체 및 실질적 폐업으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2) 원고는 2013. 2. 14. 신한은행에 이 사건 제1보증약정에 기하여 305,192,465원을, 이 사건 제2보증약정에 기하여 183,345,041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제1보증약정 관련 대위변제금으로 10,113,110원을 회수하여 현재 제1보증약정 대위변제금 잔액은 295,079,355원(= 305,192,465원 - 10,113,110원)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제1보증약정 관련 대위변제금 중 10,113,110원을 회수하였는데, 그 회수금에 대하여 회수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확정지연손해금 534,060원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 C의 처분행위

피고 C는 2012. 2. 24. 피고 D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1,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27. 피고 D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와 접수 제1736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 B의 처분행위

1) 피고 B는 2012. 3. 13. 피고 E(피고 B와 동서지간이다)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E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와 접수 제2271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B는 2012. 5. 29. 피고 F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등기와 접수 제5211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 C에 대한 각 구상금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구상금채무의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잔액 합계 478,424,396원(= 이 사건 제1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 295,079,355원 + 이 사건 제2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 183,345,041원)과 이 사건 제1보증약정에 기하여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 534,060원을 합한 478,958,456원 및 그 중 위 대위변제금 합계 478,424,39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3. 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인 2013. 5. 30.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 E, F에 대한 각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가. 피고 D에 대한 청구

1)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C가 2012. 2. 24. 피고 D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이 성립되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올라 제1호증, 올라 제2,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는 2010. 9. 12. G 종중 사무국장으로 선임되어 종중 기금을 관리하던 중 동생인 피고 B의 부탁을 받고 2010. 11. 2. 종중 기금 계좌에서 7,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 회사 자금으로 빌려주고, 그 후에도 2011. 6. 13. 2,000만 원, 2012. 2. 9. 2,000만 원, 2012. 2. 10. 500만 원을 위 종중 기금관리 계좌에서 피고 회사 계좌로 각 이체하여 준 점, ② 피고 C는 피고 B의 부탁으로 2011. 11.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되었고, 피고 C는 2012. 2. 24. 위 종중 기금 합계 1억 1,5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종중 회장인 피고 D에게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 ③ 그 후 피고 회사의 재정악화로 인하여 2012. 10.경부터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다가 2012. 11. 2. 실질적 폐업에 이름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과 피고 C와 피고 B의 인적관계 및 피고 C의 연대보증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발생한 뒤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곧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가 2013. 2. 14. 신한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피고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갑 제9호증의 1, 제18호증의 2, 3, 제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시 관악구청장, 천안시 동남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가 2012. 2. 24. 피고 D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C는, ① 시가 58,027,500원 상당의 위 부동산, ② 시가 41,883,900원 상당의 천안시 동남구 H 답 937m², ③ 시가 3억 8,000만 원 상당의 서울 관악구 I 외 5필지상 J아파트 108동 601호를 각

소유하고 있어 합계 479,911,400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구상금 채무 외에도 위 종중에 대한 대여금채무 1억 1,500만 원, 위 J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K에 대한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피고 C가 채권자들 중 한 명인 피고 D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위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피고 C의 기존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거나 피고 C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행하여졌다는 등의 담보제공의 동기 혹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 C의 위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D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3) 피고 D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D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 D의 선의 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올라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 종중 이사회는 2010. 12. 15. 종중 기금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연 4.5%의 이율을 적용하여 이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당시 종중 사무국장인 피고 C가 운용한 종중 기금에 대하여도 담보를 제공받기로 의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D가 2012. 2. 24.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피고 C의 다른 일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종중 회장인 피고 D는 2010. 12. 25.경 피고 C가 동생인 피고 B의 부탁을 받고 그 전부터 종중 기금을 피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 C나 피고 B로부터

대여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도 못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담보를 전혀 제공받지 않고 있다가 추가로 종종 기금을 대여해 준 후인 2012. 2. 24.에서야 종종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피고 C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 C와 피고 D 사이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D는 피고 C에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 F에 대한 각 청구

1) 피보전채권의 존재 피고 B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13. 피고 E와, 2012. 5. 29. 피고 F와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이 성립되어 있었는데, 그로부터 수개월 후인 2012. 11. 2. 피고 회사의 재정악화 및 폐업으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바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는 2005년경 중학교 동창 모임에서 만난 피고 F와 알고 지내다가 2009. 12.경 피고 F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점, ②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1. 11.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F로부터 지속적으로 위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받던 중 2012. 5. 29.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게 된 점, ③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는 2010. 11. 2.경부터 피고 C로부터 종종 기금을 빌려 피고 회사 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발생한 뒤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곧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가 2013. 2. 14. 신한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각 사해행위 해당여부 갑 제9호증의 2 내지 4, 제17호증의 1, 2, 제18호증의 1, 제19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아산시장, 천안시 동남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2012. 3. 13. 피고 E와, 2012. 5. 29. 피고 F와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B는, ① 시가 338,238,000원 상당의 위 부동산, ② 시가 22,378,200원 상당의 아산시 L 답 906m², ③ 시가 45,448,000원 상당의 아산시 M 답 1,840m², ④ 시가 66,961,700원 상당의 아산시 N 답 2,711m², ⑤ 시가 33,803,093원 상당의 천안시 동남구 ○ 제지하층 제비01호를 각 소유하고 있어 합계 506,828,993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구상금 채무 외에도 피고 F에 대한 대여금채무 2억 5,000만 원 등을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피고 B가 피고 E에게 피담보채무 없이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가 피고 B에 대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또한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피고 B가 채권자들 중 한 명인 피고 F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위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피고 B의 기존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거나 피고 B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행하여졌다는 등의 담보제공의 동기 혹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 B의 위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수익자들인 피고 E, F의 악의 또한 각 추정된다.

3) 피고 F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F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F은 2009. 12.경 피고 B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한 뒤 계속하여 그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피고 B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인 2011. 10. 18. 피고 B와 3억 원에 관하여 지급기일을 2012. 10. 17.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② 그 후 피고 B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13. 피고 E에게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을, 2012. 5. 1. P에게 채권최고액 1억 7,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 F이 피고 B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이르게 된 점 등 피고 F과 피고 B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 B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F은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로 인하여 피고 B의 일반 책임재산이 감소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그 부족이 심화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F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 B와 피고 E, 피고 B와 피고 F 사이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E, F은 피고 B에게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성관

판사김미경

판사김병훈

별지